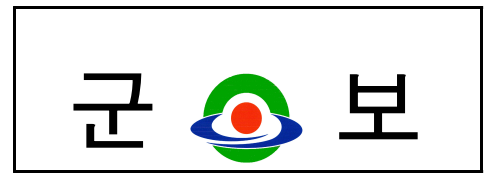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47호 2019. 2. 14.(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22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예 천 군



1. 개정 이유

- 식품위생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게 제증명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안 별표2)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 당초 1,500원 ⇨ 변경 3,000원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보건소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보건소(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 전화 054-650-8065 팩스 054-650-64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수가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2. 특별진단서	〃	2,000원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원	
4.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원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원	
7. 사망진단서	〃	500원	
8.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 름	
9. 수질검사시험성적진단서	〃	500원	
10. 발급증명서 재발급	〃	300원	
11. 각종증명서 1통 초과발급	〃	100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부 칙 <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내 용	의 건	비 고